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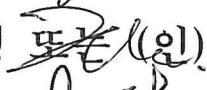




2026. 5. 26.

수신: 의장

제목: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이 룬 구	의원	서명		(원)
	이 광 규	의원	서명		(인)
	이 기 훈	의원	서명		(인)
	장 재 현	의원	서명		(인)
	박 리 언	의원	서명		(인)
	이 응 구	의원	서명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의원	서명	또는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5. 26.

발의자: 이륜구·이광규·이시훈  
정재호·이용주·박희연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서 제도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장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의 전문성 제고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정책지원관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안 제2조)

나. 정책지원관은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 배치를 원칙으로 함(안 제3조)

다. 임기제로 임명할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 가능(안 제4조)

라.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명시(안 제5조)

-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의 문서 작성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 의원 정책개발 및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 관련 보도자료·기고문 등 작성 지원 등

마.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직무제한 사항(안 제6조)

바.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안 제7조)

사. 비밀엄수 의무 및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조치(안 제8조 및 제9조)

아. 교육 훈련 실시 및 평가 반영(안 제10조)

자. 고충처리 지원(안 제11조)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6. 5. 20. ~ 6. 4.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지원관 제도  
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용)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정  
책지원관을 두되, 그 정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로 정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  
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  
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배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채용·임용·평가 등의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절차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간)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직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3. 의원의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안건 질의서 등 작성 지원

4.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5.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6. 의원 정책개발 및 의원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 관련 보도자료·기고문 등 작성 지원(단, 의원 개인이 수행한 민원처리·현장방문, 수상 등의 실적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작성은 제외)

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 또는 의회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의원의 행위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추진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의정활동 기여도,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의장은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 결과가 교육훈련·배치·상훈·재임용 등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는 정책지원관의 소속 팀장 또는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8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엄수 위반 등에 관한 조치) 정책지원관이 제8조의 비밀엄수 의

무를 위반하거나 의회 공유재산상의 손해, 의원 의정활동 자료 훼손·삭제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장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교육 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고충처리 지원)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조건과 임용·복무·교육·상훈 등 인사 및 그 밖에 신상 문제에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